

'24.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 상상인플러스 경영개선요구 및 유니온 적기시정조치 유예
- 현재까지('25.3월까지의 재무제표기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어, '24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실상 마무리

* 5개사 적기시정조치 유예, 3개사 경영개선권고, 1개사 경영개선요구

◆ 금융위원회는 '25.6.25.(수)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건전성 개선 노력에 필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자산 건전성 등이 개선된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음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조치 이행 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

* '24.12.24일 및 '25.3.19일 경영개선권고 3개사와 유예 4개사도 현재 정상 영업 중

- 조치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임

◆ 이후 현재까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 기 조치된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24.12.24일] (경영개선권고) 안국, 라온 (적기시정조치 유예) SNT

['25. 3. 19일] (경영개선권고) 상상인 (적기시정조치 유예) 페퍼, 우리, 솔브레인

금융위원회는 '25.6.25.(수)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 및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영개선요구 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그간 2차례에 걸쳐 기 조치된 3개사와 유예 4개사도 현재 정상 영업 중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이라도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 차주상환능력 악화 등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24년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으로 3차례의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여, 그 후속조치*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유예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24.12.24일, '25.3.19일, '25.6.25일(금일) 등 총 3회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 기 조치된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93)
<공동>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	책임자	국 장 이건필 (02-3145-7410)
		담당자	팀 장 이정만 (02-3145-7370)
<공동>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책임자	부 장 강호성 (02-758-0551)
		담당자	팀 장 오영일 (02-758-0581)



1.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 경위는?

- 감독당국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전성이 악화되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되었음
 - ※ ① 종합등급 1~3등급이며,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5등급 : 경영개선권고
 - ② 종합등급 4~5등급 : 경영개선요구

2.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 의미는?

-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이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이 수반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상이
 - ※ (경영개선권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
 -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권고 조치, 위험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산처분 등
 -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요구 조치, 6월이내 영업정지, 계약이전, 임원 직무정지 등
-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12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임

3.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현재 경영현황은?

- 상상인플러스의 '25.3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높은 수준이나(업권평균 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
- BIS비율(8.6%) 및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비율(BIS비율 8%, 유동성비율 100%)을 상회하고 있음
- ※ 중앙회 4차 공동펀드(6월말 예정)에 의한 해당회사 연체율 등 개선 효과(추정) :
(연체율) △2.5%p (고정이하여신비율) △3.2%p

4.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중 2단계로서 경영개선권고(1단계) 대비 해당 저축은행이 이행해야 할 경영정상화의 강도는 높으나,
-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 ※ '25.9.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
- 예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 (예시) '24.10.1일 연이율 3.9% 및 만기 1년 정기에예금에 4천 5백만원을 가입한 경우,
① '25.9말 만기 시점까지 유지시 이자 1,755,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②'25.6월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658,125원만 수령 가능하여 1,096,875원 손실 예상

* 중도해지이율(예시) : (~1개월) 보통예금 이율, (2~10개월) 약정금리X50%, (11개월 ~) 약정금리X55%

5. 이번 경영개선요구로 저축은행업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 이번 조치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

※ BIS비율(%) : ('11말) 6.84 vs ('24말) 14.98 ('25.3말) 15.28

※ 과거에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하여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되었음

6.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유니온저축은행과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 유니온은 경영실태평가('24.9월말 기준) 이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 등을 정리하여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되었고
-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것임